

## 건축위원회 (서면)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	심의일자	2024. 5. 24. ~ 5. 31.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○ ] 기타(건축물 해체허가 적정성 검토)		
건축주	현대○○○○		
대지현황	대지위치 :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동		
	지번 : 162번지	관련지번 : 156필지	
	대지면적 : 430,407㎡	용도지역 : 일반공업지역,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: 11,970.823㎡	건폐율 : 2,781%	층수 지하 : / 지상 : 8층
	주용도 : 공장	구조 : 일반철골구조	세대수(호)/동수 : 가구 / 1동
	최고높이 : 34m	용적률 : 4,206%	연면적 : 18,104.373㎡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
	종합의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p.36 - 이동식 크레인 지내력 검토시 <math>f_e=300KN/m^2</math> (단기)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있으나, 현장에 대한 근거자료가 미제시되어 있으므로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지내력에 근거하여 복공판(1.5x1.5x0.3)크기를 재검토할 것</li> <li>2. p.38 - 이동식 크레인 부속용구(셔클) 전단검토결과 t=0로 검토되어 있으므로 검토 후 수정할 것</li> <li>3. p.42 - 해체장비에 따른 잭서포트 설치 위치도 미작성</li> <li>4. p.49 - 가설울타리 6.0m로 계획되어 있으나 해체대상물의 높이 +1.0m 이상으로 재검토할 것</li> <li>5. p.64 -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하부 작성방법 1.에 해당되므로 작성할 것</li> <li>6. 구조안전성 검토서(3.1개요)에는 가옥조 지상1층 구조물 해체에 대해서만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치되는 지하구조물에 대한 보존 등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것</li> <li>7. 감리자 및 공사 관련자들이 해체과정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공정사항이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해체내용이 명기된 공정표가 필요해 보임</li> <li>8. 건물의 높이가 최고높이는 30미터를 넘고 공장 외곽높이도 10미터를 초과하는데 외부 가설비계처럼 비산이나 기타 해체물의 확산방지를 위한 시설이 전무하고 단지 공사장 주위 안전펜스를 설치한 상태로 비산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</li> <li>9. 지상부 및 PIT, 기초 철거 치 살수 등 콘크리트 철거에 대한 도서 및 상세계획이 누락되어 있고 추후 임의 철거가 진행되지 않도록 추후 기초부위 철거시 반드시 심의, 허가, 감리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안전한 해체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획서 상에 관련된 계획이 언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</li> <li>10. 외부펜스 경우도 펜스미설치 부위 주변공장 이용동선, 차량과 동선이 해체 관련 동선과 구분 될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해 보임</li> <li>11. 해체순서도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당 공장 건물에 맞는 순서와 이미지 개념도 정리가 필요해 보임</li> </ol>	

		<p>12. 크레인과 고소작업차 작업반경에 따른 간섭 및 고소작업차 반대편 작업시 인력 작업방법 및 기능여부 검토가 필요해 보임</p> <p>13. 건축물 해체 및 해체잔재물 운반 작업시 공장 내부도로 상의 차량 및 보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점유면적을 최소화할 것</p> <p>14. 해체계획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체공사시 안전시설 설치, 신호수 및 교통통제수 배치, 작업장 출입통제, 작업자 안전교육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</p>
--	--	--

<p>심의결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 ] 원안 의결    [ ○ ] 조건부 의결    [ ] 재검토 의결    [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</li> </ul>
-------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m<sup>2</sup>]